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문 학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학진흥법」 기개정안('20.6.9. 시행)은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이에 시행령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9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 '21.11.19. 시행 예정인바, 동 법률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문학관 협력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학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3. 주요내용

가. 중복된 표현의 정비(안 제9조)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을 “한국 문학”으로 수정함으로써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고자 함.

나. 문학관 협력망의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 협력망 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

문학관 협력망에 관한 규정을 신설(법 제30조의2)함에 따라 협력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망의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 지역대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협력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없음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을 각각 “한국 문학”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협력망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에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 지역대표관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 ----- -----.
1. 해당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u> 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1. --- <u>한국문학</u> ----- ----- -----
2. 해당 <u>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u> 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 --- <u>한국문학</u>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1조의2(협력망의 구성 등) ①</u>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에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이 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 지역대표관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u>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력
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710